

수신 : ○○○○○

발신 : 베트남 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장 김흥수

제목 : 2019년 베트남 노동법 개정 관련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코참 의견

귀 기관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베트남 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이하 KOCHAM)는 귀 기관이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우호적인 정책과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코참은 베트남에 진출한 7천여개의 한국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협회이며, 한국기업들은 약 100만여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고 베트남의 고용문제 해결 및 소득증대에 일정한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코참에서는 지난 9월 4일 '2019년 베트남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하여,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베트남 노동부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국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견을 듣고, 본 내용을 전달 드리며, 해당 노동법 개정 등에 적절히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1.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서 기간 연장 개정 관련**

취업 허가 기간과 관련한 신규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허가 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대 2년으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총 4년간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이후 해당 근로자가 베트남 계속 근무할 경우, 신규로 취업 허가과 비자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한국으로 귀국해서 관련 서류 준비를 해야 하는 등, 회사와 근로자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이로 인한 업무 단절도 우려 됩니다.

특히, 베트남 내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관리자 등은 일반 단순 노동자가 아닌, 엔지니어 혹은 전문가들로서 계속 근무를 요하는 직원들의 경우, 기업활동에 매우 유용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로서, 일반 단순 근로자들의 노동허가서 기간 연장 제도에 연관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 엔지니어 및 전문가들의 노동허가서 기간 연장 절차를 면제 혹은 간소화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할 경우, 5년이상 장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베트남 내 기업과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2. 주당 최대 근무 시간(44 시간) 감축 관련**

최근 베트남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통해,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기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것은, 베트남의 많은 인력을 고용하여 전체 경제에 고용효과를 매우 높이고 있는 주요 제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KOCHAM 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8년 베트남 통계청 자료 기준(GSO), 베트남 전체 수출액(2,450억불)의 14.7%(360억불)를 차지하고 있는, 섬유·의류 산업을 비롯하여, 신발, 가방, 전자부품 등 제조 및 임가공 기업들로 하여금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노동력을 채용하게 함으로써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해당 노동집약산업들을 무너뜨리게 할 것입니다. 특히, 섬유 및 의류 산업군은 EVFTA와 CPTTP와 같이, 최근 베트남이 주요 교역 국가들과 맺은 무역협정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이 예상되는 분야이기도 하며, 올해 400억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베트남의 주요 수출 분야이기에, 베트남 전체 수출 업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당 근무시간 4시간 감축은 연간 208시간의 노동시간 감축을 의미하며, 단순히 그로 인한 기업의 생산 규모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경제 규모 자체를 감소시키고, 베트남 경제 발전 속도를 둔화시키는 악영향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우려 됩니다.

즉, 주당 4시간 감축함으로써, 연간 208시간의 근무시간을 감축하는 것은, 기본 급여 시간을 줄임으로써 시간당 기본급을 9.1% 상승시키고 초과 근무수당을 1.13%이상 할증 시킴으로써, 결국 같은 시간을 근무함에도 10.23%이상의

인건비 상승을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많은 노동력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은 현재 빠르게 경제 발전을 이뤄가고 있는 국가이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며, 비교적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짐으로써, 베트남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는 베트남 제조업의 강점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번 개정 시에는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현행 48 시간 수준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3. 연간 초과 근무 최대 400 시간 연장 시행 관련**

현재, 베트남 정부는 연간 초과 근무시간을 일반산업의 경우 최대 200 시간, 일부 산업(섬유 및 의류 산업, 신발 산업 등)은 최대 300 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주변 국가에 비해서도 훨씬 짧은 수준이며, 베트남 GDP 성장 촉진과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의 수 많은 제조 기업들은, 이미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최저 임금 인상률과 주변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노동 생산성 등으로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많은 외국 투자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오는 것은 베트남의 우호적인 정책과 베트남 근로자들의 근면함 때문일 것입니다. 베트남은 이러한 기회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KOCHAM 은 베트남 정부에서 금번 노동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연간 초과 근무 시간 일반산업 최대 300 시간 및 일부 산업(섬유 및 의류 산업, 신발 산업 등) 최대 400 시간 시행에 관하여, 깊이 공감하며 지지하는 바입니다.

#### 4. 초과 근무 수당 누진제 관련

노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누진제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 두 가지 안을 고려 중인 것 같습니다.

- (1) 현행 평일 초과 근무수당 계산방법(시간당 150%)을 유지하고, 현행 기준보다 높은 누진 계산은 노사간 협의에 의해 이루어짐.
- (2) 누진계산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평일 초과근무는 첫 2 시간 = 급여의 150%, + 1 시간 = 급여의 165%, + 1 시간 = 급여의 180%

(1)안과 관련하여 현행 기준보다 높은 누진 계산을 노사간 협의에 의해 정한다는 것은, 매년 합의 시 논란의 여지가 있어, 각 기업 노사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리고 (2)안과 관련하여, 누진계산법을 초과 구간에 따라 세분화해서 규정하는 것은 베트남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기업, 특히 2 교대 혹은 3 교대 근무조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일부 섬유 및 의류, 신발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적용 범위와 산식이 상황에 따라 너무 복잡할 뿐더러,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 되고, 근로자들은 제도상의 이러한 점을 악용, 업무를 고의 지연시킬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두 가지 안으로 법률 개정 시, 기본적으로 베트남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의 비 정상적인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무엇보다 각 기업들은 법 준수를 위해 더 많은 평일 주간 근로자를 따로 채용하고, 그에 따른 추가 생산시설을 확충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 제조기업들의 경쟁력을 감소 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내 기업들이 제조 기지를 주변 국가로 이전하게 하는 등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개정안은 보류해 주시고, 현행 평일 초과 근무수당 계산방법인 시간당 150%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유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 5. 복수노조 설립 관련

노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사내 복수노조를 설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KOCHAM은 아래와 같은 심각한 우려사항들이 예상됨을 밝히는 바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복수 노조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회사측은 모든 노사 문제에 있어 복수 노조와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같은 사안에도 어느 노조와는 합의가 됐는데, 다른 노조와는 합의가 되지 않아 파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례는 인근 국가인 캄보디아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회사측을 공격하는 노조의 설립과 활동에 대해서도 회사측으로서는 직접적인 대응책 마련이 어렵게 됩니다.

이렇듯, 복수 노조 설립은 회사 측으로 하여금, 1년 내내 여러 노조들과의 신경전으로 경영에 집중하기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노사간의 대립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복수 노조 설립은 경영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악법이 될 것이므로 개정안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 베트남은 여전히 주변국가들보다 낮은 노동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코참과 한국기업은 베트남 고용 증대와 경제 성장에 그 어느 나라 기업들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베트남과 함께 성장을 이어갈 것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업들의 의견을 이번 노동법 개정에 참고하시어, 외국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베트남에 투자하고 경제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 2019 년 노동법 개정 관련 추가 의견 자료 - 1 부.

**베트남 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

**회 장 김 흥 수**